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1월 23일
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 2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도시계획과장 홍재정)

□ 제안이유

- 자치구 차원의 비전과 도시발전구상 부재 등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의 및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·관리 기틀을 마련하고,
- 강서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화 시대에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강화 및 확립하고, 57만 인구 자치구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강서구도시기본계획,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
(안 제2조)
- 나. 강서구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, 내용, 타 계획과의 관계 조항을
신설함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
(안 제8조)
- 라. 위원회 회의 결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 조례에 따라 개정함
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 의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2. 9. 28. ~ 10. 18.) 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일부 반영
 - 분과위원회 성별균형 참여 명시(반영)
 -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성별균형 고려(미반영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강서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어 등을 정의하고 강서구도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됨.

나. 주요 내용

-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

- ‘강서구도시기본계획’, ‘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’, ‘구계획시설’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함.

- 강서구도시기본계획: 공간구조와 정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분야별·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
-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: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
- 구계획시설: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 시설
- 구계획시설사업: 구계획시설을 설치·정비, 개량하는 사업

- 제1호의 ‘강서구도시기본계획’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인지, 자치구 차원의 비법정계획인 ‘자치구 도시발전계획’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어상 해석이 애매함.

-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내용 등 규정 신설

(제2장, 안 제4조~제6조)

-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.

-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등 정비(안 제7조 ~ 제21조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따라, 정책결정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
(안 제8조제1항, 안 제12조제2항)
 - 회의록 관련 사항은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61조를 따르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)

다. 종합 의견

-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주민수요에 신속하고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, 도시관리계획 결정·변경 권한의 확대,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등 자치구로의 도시계획 권한위임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¹⁾ 자치구로의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.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²⁾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³⁾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,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음에도, ‘도시기본계획’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1)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46차 정기회의 안건 논의 결과: 보류(안건번호 146-07) 서울도시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기본계획 도입(건의기관: 강서구)

2)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3) 제18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“강서구도시기본 계획”의 정의 등을 수정함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2조제1호 중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이란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이란으로, “종합계획으로”를 “종합계획으로서 토지이용,”으로, “환경 등 분야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기본계획”을 “환경, 공원, 녹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2장의 제목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강서구도시기본계획”을 “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붙임 관계 법령 1부.

제2장 도시계획위원회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2장 강서구도시기본계획

- 제4조(기본방향) ① 강서구도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한다.
- ②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- ⑤ 기본계획은 구청장 임기와 연동하여 4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.

- 제5조(기본계획의 내용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 2.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공원·녹지·경관 등에 관한 사항
 3. 도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
 4. 도시·구계획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
 5.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사항
 6. 그 밖에 강서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타계획과의 관계)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, 원도심활성

제2장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

- 제4조(기본방향) ①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-----

-----.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화중합계획 등 그 밖의 도시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3장 도시계획위원회

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

제7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 강서구에 -----

-----.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구청장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 도시계획 관련 ---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구성) ① -----

-----.

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

운영 등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

1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(생략)

2.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

3. (생략)

4.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
5. 6. (생략)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

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

의회·구의회·감사원·법원·검찰·경찰 등의 기관장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법 제113조2 및 영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(단,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15조(수당 등)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)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7조 (생략)

제2절
도시계획상임기획단

<신설>

제18조 (생략)

<삭제>

<삭제>

④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19조(수당 등) ----- 강서
구 공무원 및 구의원-----

-----.

제2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<삭제>

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제22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

제19조(기획단의 구성) ①
(생략)

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
이용, 주택 등 도시계획과
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한 구소속 일반
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
원으로 둘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0조 ~ 제22조 (생략)

제3장 보 칙

<신설>

제23조 (생략)

제23조(기획단의 구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강서구 소속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 ~ 제26조 (현행 제20조부
터 제22조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제4장 보 칙

제27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8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또는 군의 위치, 인구의 규모, 인구감소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>

제19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) ① 도시·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8. 6. 12.>
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2. 공간구조,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
3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7. 공원·녹지에 관한 사항

8. 경관에 관한 사항

8의2.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

8의3. 방재·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

9.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2011. 4. 14.>

③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제4조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30.>

② 시장은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1.>

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,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30.>

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·계층·인종·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0. 20.>

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0. 8.>